부안해양경찰서 공고 제2023 - 5호

2023년도 부안해양경찰서 공무직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채용후보자 등록 안내

2023년 부안해양경찰서 소속 공무직근로자(환경미화) 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부안해양경찰서장

1. 최종 합격자 명단

임용 예정 직급	합격인원	합격자 명단
공무직근로자 (환경미화)	2명	571108 최○애 571110 김○애

2. 최종 합격자 등록 안내

▢ 등록대상: 최종합격자 2명

▢ 등록기간: 2023.12.22.(금) ~ 12.28.(목)

▢ 제출장소: 전북 부안군 행안면 부안로 2531 부안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 채용담당자 앞

▢ 최종합격자는 아래(붙임 1) 목록 참고하여 등록기간 내 구비서류 제출

※ 등록마감일 18:00까지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송부<12.28(목) 소인까지 인정>

3. 유의 사항

가. 채용후보자 등록 대상자는 등록의사가 없는 경우 붙임 서식의 「등록 포기서」를 작성하여 2023.12.26.(화)까지 방문 제출바랍니다.

(※사전연락 필수)

나. 최종 합격자의 등록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록 당일 퇴직 등의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면접 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부적격 사유 발생 시에는 등록사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결격사유 등 부적격 시)

라. 기타 사항은 부안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 063-928-231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최종 합격자 제출서류 목록

연번	제출 서류	수량	유의 사항	비 고
1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주민번호 체크 후 주민번호 기재, **자필서명*** * 자필서명은 본인이름 정자 기입	
2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	국·공립 또는 종합병원에서 발급, 최근 1년 이내의 것으로 함	증명사진 필수 부착
3	기본증명서(상세)	1부	본인기준, 주민번호 전체 기재 ※ '23.12.22. 이후 발급 제출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본인기준, 주민번호 전체 기재 ※ '23.12.22. 이후 발급 제출	
5	주민등록등본(상세)	1부	주민번호 전체 기재 ※ '23.12.22. 이후 발급 제출	
6	공정채용 확인서	1부	서식 참조	
7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서식 참조	
8	후견 등기사항부존재 증명서	1부	전자후견등기시스템 발급 ※ '23.12.22. 이후 발급 제출	

붙임 2 **등록·임용 포기서**

등록·임용 포기서

(□ 등록 / □ 임용)

▪ **시험구분 :** 부안해양경찰서 공무직근로자 채용시험

▪ **응시번호 :**

▪ **성 명 :** ▪ **생년월일 :** -

▪ **주 소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일반전화 - - , 휴대전화 - -

위 본인은 ( ) 사정으로 인하여 공무직근로자로 임용될 의사가 없으므로 □ 등록 / □ 임용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2023년 월 일

(서명/인)

부안해양경찰서장 귀하

※ 괄호안 **포기사유** 예시 : 학업, 지방공무원합격(임용), 취업, 사업, 질병, 가사형편 등

※ 성명 옆에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맨 아랫줄은 수신기관 표시

붙임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경찰청(소속기관 포함)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신원조사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주민등록표 등·초본	6	고등학교졸업증명서
2	자동차등록원부(갑)	7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3	출입국에 관한사실 증명		
4	병적증명서		
5	검정고시합격증명서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붙임 4 공정채용 확인서

공정채용 확인서

해양경찰청은 「정규직 전환 관련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지침('18.11.1)」에 따라 기관 종사자의 친인척 채용 등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지원자 본인의 확인을 받고자 하오니,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 (☐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 채용정보 사이트 ☐ 친인척 소개 ☐ 지인소개
   ☐ 기타 사유:)의 경로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 본인은 면접에 이르기까지 채용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 담당자 및 이와 유사한 위치에 있는 자에게 채용과 관련한 청탁을 (☐ 하였다. ☐ 하지 않았다.)

3. 해양경찰청 직원(퇴직자 포함) 중 친인척 관계가 있다면,
   ( )촌 이내이며, (근무지:)에 근무 중인 (성명:)입니다.
   ( )촌 이내이며, (근무지:)에 근무 중인 (성명:)입니다.

4. 해양경찰청 재직하였던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 생각한다. ☐ 생각하지 않는다.)

5. 채용 관련 서류 제출 후 해양경찰청 업무 담당자 및 채용 업무 종사자에게 편의를
   (☐ 부탁하였다. ☐ 부탁하지 않았다.)

6. 사전에 면접위원과 채용 관련 대화 또는 만남을 (☐ 가졌다. ☐ 가지지 않았다.)

7. 친분관계가 있는 면접위원이 면접절차에 (☐ 참가하였다. ☐ 참가하지 않았다.)

8. 업무 담당자 및 면접위원으로부터 조건으로 한 금품수수 등에 관한 연락을
   (☐ 받았다. ☐ 받지 않았다.)

상기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이며, **추후 채용비리 사항이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않고 합격 취소, 채용 취소 및 면직 처리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에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합격 취소, 채용 취소 및 면직 처리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3. . . 상기본인: (서명 또는 인)

붙임 5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부안해양경찰서 공무직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아래 법률의 채용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해양경찰청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17조(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023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부안해양경찰서장 귀하